

의안번호	2201756
의 퇴 인	이달희 의원
회 답 일	2024. 7. 30.
추계번호	24F2012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비수도권 소재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비수도권 소재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2~7%p 인하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6년 5,093억원, 2030년 8조 3,595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31조 2,539억원(연평균 6조 2,50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비수도권 소재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(안 제55조 제1항)	-5,093	-69,932	-74,768	-79,151	-83,595	-312,539	-62,508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안 제55조 제1항 (법인세율)	○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 차등화 － (수도권) 현행 법인세율 유지 － (비수도권) 과표 구간별 세율 2~7%p 인하 <현행> <table><thead><tr><th>과세표준 구간</th><th>세율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2억원 이하</td><td>9%</td></tr><tr><td>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</td><td>19%</td></tr><tr><td>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</td><td>21%</td></tr><tr><td>3천억원 초과</td><td>24%</td></tr></tbody></table> ⇒ <개정안> <table><thead><tr><th>본사 소재지</th><th>과세표준 구간</th><th>세율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 rowspan="4">수도권</td><td>2억원 이하</td><td>9%</td></tr><tr><td>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</td><td>19%</td></tr><tr><td>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</td><td>21%</td></tr><tr><td>3천억원 초과</td><td>24%</td></tr><tr><td rowspan="4">비수도권</td><td>2억원 이하</td><td>7%</td></tr><tr><td>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</td><td>12%</td></tr><tr><td>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</td><td>14%</td></tr><tr><td>3천억원 초과</td><td>17%</td></tr></tbody></table>	과세표준 구간	세율	2억원 이하	9%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9%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1%	3천억원 초과	24%	본사 소재지	과세표준 구간	세율	수도권	2억원 이하	9%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9%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1%	3천억원 초과	24%	비수도권	2억원 이하	7%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2%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14%	3천억원 초과	17%	
과세표준 구간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이하	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1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천억원 초과	2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본사 소재지	과세표준 구간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도권	2억원 이하	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1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천억원 초과	2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수도권	2억원 이하	7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2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1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천억원 초과	17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55조 제1항 (법인세율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4년 말 통과될 경우, 부칙에 따라 6개월 후 시행되므로 2026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며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
 -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율변경 효과는 확정신고·납부가 이루어지는 2027년에 발생하지만, 중간예납을 통해 세수효과의 일부가 2026년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세청이 제공한 본사 소재지별 법인세 신고자료 (2023년 신고기준)를 활용하여 추계하며,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함
 - 본사 소재지·과세표준 구간별 기업 수는 2023년 신고 수준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1법인당 과세표준은 2023년(2022년 귀속소득)을 기준으로, 향후 국회예산 정책처가 전망한 법인세 증감률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－ NABO 법인세 증감률 전망(%)¹⁾:
(‘24) 5.2, (‘25) 10.5, (‘26) 8.3, (‘27) 7.5, (‘28) 6.6, (‘29) 5.6, (‘30) 5.4
 - 중간예납액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율이 2020~2023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
 - －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이 차지하는 비중: 2019~2022년 평균 34.1%
 - － 중간예납 납부금액 중 ‘가결산 기준’ 비율: 2020~2023년 평균 21.5%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」, 2023. 10.

□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
- 본사 소재지별 법인세율 차등에 따라 본사이전 등 기업의 행태가 변화할 수 있으나, 동 추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

3. 상세 추계내역

□ (법인세 신고현황) 과세표준 구간 및 본사 소재지별로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, 과세표준, 1기업당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
[표 2] 지역별 법인세 신고 현황: 2023년 신고법인 기준(2022년 귀속)

<수도권 소재 법인>

과세표준 구간	기업 수(개)	과세표준(억원)	1기업당 과세표준(억원) ¹⁾
2억원 이하	546,059	115,752	0.6
2억원~200억원 이하	76,988	933,631	12.1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1,396	884,541	633.6
3,000억원 초과	110	1,563,953	14,217.8

<비수도권 소재 법인>

과세표준 구간	기업 수(개)	과세표준(억원)	1기업당 과세표준(억원) ¹⁾
2억원 이하	357,567	86,678	0.5
2억원~200억원 이하	48,250	498,729	10.3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563	316,832	562.8
3,000억원 초과	27	190,542	7,057.1

주: 1) 과세표준이 “0”이거나 “음수”인 기업은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임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과세표준 전망) 과세표준 구간별 1법인당 과세표준은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법인세 증감률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
[표 3] 지역별 1법인당 과세표준 전망(귀속기준)

(단위: 억원)

<수도권 소재 법인>

과세표준 구간	2026	2027	2028	2029	2030
2억원 이하	0.7	0.8	0.8	0.8	0.9
2억원~200억원 이하	15	16	17	18	18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772	824	870	917	963
3,000억원 초과	17,331	18,483	19,517	20,568	21,613

<비수도권 소재 법인>

과세표준 구간	2026	2027	2028	2029	2030
2억원 이하	0.7	0.7	0.7	0.8	0.8
2억원~200억원 이하	13	13	14	15	16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686	732	773	814	855
3,000억원 초과	8,603	9,174	9,687	10,209	10,728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1기업당 산출세액) 개정안에 따라 변화되는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의 1기업당 산출세액 변화분을 추계
- 수도권 소재 법인의 경우 세율 변경이 없으므로, 비수도권 소재 법인에서만 1기업당 산출세액 변화가 나타남

[표 4] 지역별 법인의 1기업당 산출세액 변화(귀속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<비수도권 소재 법인>

과세표준 구간	2026	2027	2028	2029	2030
2억원 이하	-0.013	-0.014	-0.015	-0.016	-0.016
2억원~200억원 이하	-0.8	-0.8	-0.9	-0.9	-1.0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-48	-51	-54	-57	-60
3,000억원 초과	-602	-642	-678	-715	-751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전체 산출세액) 1법인당 산출세액 변화분에 과세표준 구간별 기업수 (2023년 신고기준)를 곱하여 전체 산출세액 변화분 추계

[표 5] 지역별 법인의 전체 산출세액 변화(귀속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<비수도권 소재 법인>

과세표준 구간	2026	2027	2028	2029	2030
2억원 이하	-2,113	-2,254	-2,380	-2,508	-2,635
2억원~200억원 이하	-37,731	-40,558	-43,098	-45,678	-48,244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-26,979	-28,775	-30,388	-32,027	-33,657
3,000억원 초과	-16,256	-17,336	-18,307	-19,292	-20,272
계	-83,080	-88,923	-94,173	-99,505	-104,808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부담세액) 앞서 추정한 산출세액 변화분에 공제·감면 등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(2023년 신고기준)을 적용
- 비수도권 소재 법인의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: 77.0~91.8%

[표 6] 지역별 법인의 부담세액 변화(귀속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<비수도권 소재 법인>

과세표준 구간	2026	2027	2028	2029	2030
2억원 이하	-1,746	-1,862	-1,966	-2,072	-2,177
2억원~200억원 이하	-29,070	-31,248	-33,205	-35,193	-37,170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-23,840	-25,427	-26,853	-28,301	-29,742
3,000억원 초과	-14,919	-15,910	-16,800	-17,705	-18,604
계	-69,576	-74,448	-78,825	-83,271	-87,693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납부시점 배분) 법인세가 실제 국고에 귀속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세수 효과 기간을 반영
-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당해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8월 중간예납과 다음 해 3~4월 확정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
 - 중간예납세액 비중과 가결산 비율 감안 시, 세수효과의 7.3% ($=34.1 \times 21.5\%$)가 당해 귀속연도에 영향을 줌

-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이 차지하는 비중: 2020~2023년 평균 34.1%
- 중간예납 납부금액 중 '가결산 기준' 비율: 2020~2023년 평균 21.5%

[표 7] 법인세 납부시점 배분

납부시점 귀속 사업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2026	(중간예납)					
2027		(중간예납)				
2028			(중간예납)			
2029				(중간예납)		
2030					(중간예납)	

- (추계결과) 비수도권 소재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2~7%p 인하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6년 5,093억원, 2030년 8조 3,595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31조 2,539억원(연평균 6조 2,50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비수도권 소재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(안 제55조 제1항)	-5,093	-69,932	-74,768	-79,151	-83,595	-312,539	-62,508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837	nororand@assembly.go.kr